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동의

발의년월일 : 2005. 6.

발 의 자 : 김영진 의원의 1인

### 1. 주 문

-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아래와 같이 20% 경감한다.
- 표준세율 개정내용
  - (1) 재산세 과세표준액 4,000만원이하의 경우  
세율 "1,000분의1.5" 를 "1,000분의 1.2"로 인하
  - (2) 재산세 과세표준액 4,000만원초과 1억원이하의 경우  
세율 "6만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"을  
"4만8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4"로 인하
  - (3) 재산세 과세표준액 1억원 초과인 경우  
세율 "24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"를  
"19만2천원+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"로 인하

### 2. 제안이유

-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제를 개편함에 따라 2005년 우리구 주택분 재산세중 일반주택은 전년보다 다소 인하 예정이나,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인 50%까지 인상된 가구가 65%에 이르고 전년대비 과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파트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조세의 형평성 문제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

-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세율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, 과도하게 인상된 재산세를 20% 인하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【지방세법제188조(세율)제③항】 시장·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

다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1조의2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4,000만원이하	1,000분의 1.2
4,000만원초과 1억원이하	4만8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4
1억원초과	19만2천원+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○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제21조의2 제3호 나목(서울)

현		개 정 안	
<과세표준>	<세 율>	<과세표준>	<세 율>
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1.5	4,000만원 이하	1,000분의 1.2
4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6만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	4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4만8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4
1억원 초과	24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	1억원 초과	19만2천원+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부 칙		부 칙	
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</p>		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단,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</p>	